## 기후환경위기대응사업단 운영규정

2024. 5. 8. 제정

- 제1조(목적)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 '기후위기 시대의 공존과 상생' 컨소시엄 참여대학 간 학술 협력 및 강의 공유, 그리고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기후환경위기대응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기후환경위기대응사업단) ①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(이하 "사업"이라 한다) 및 기후환경과 문화 전공(이하 "전공"이라 한다) 운영을 총괄하기 위해 기후환경위기대응사업단(이하 "사업단"이라 한다)을 둔다.
  - ② 사업단은 단장, 부단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며,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제3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공운영위원회, 사업기획운영위원회, 자체평 가위원회, 지속가능위원회를 둔다.
  - ① 전공운영위원회는 매 학기 1회 이상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전공 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한다
  - ② 사업기획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요청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며, 사업단 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.
  -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사업단의 목표 대비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한다.
  - ④ 사업 목적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학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업단 내에 '지속가능위원 회(sustainability committee)'를 둔다.
- 제4조(위원회 구성 및 임기) ① 전공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, 전공 참여 교원, 미래인재대학장으로 구성 하며,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  - ② 사업기획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, 부단장, 미래인재대학장, 전공 주임교수로 구성하며,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  -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미래인재대학장, 사업단장, 부단장, 전공 주임교수, 사업 참여교수 2인으로 구성하며, 미래인재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  - ④ 지속가능위원회는 기획처장, 미래인재대학장, 사업단장, 부단장, 전공 주임교수, 외부위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  -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사업 기간으로 하며, 보직자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 단, 각 위원회 임명직 위원은 사업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제5조 (참여대학 간 교과목 공유 및 공동 강의 활성화) ① 참여대학인 덕성여대, 국민대, 인하대, 울산대, 조선대의 공동 협약에 따라 컨소시엄 참여대학 소속 학생들은 전공에 개설된 교과목들을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다. 대면 강의 또는 실시간 화상강의 등의 형태로 수강하며, 이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실시한다.

- ② 공유대학 가치의 구현을 위해 대면 강의 이외에 실시간 화상강의, 블렌디드 러닝(blended learning), 이러닝(e-learning) 등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.
- 제6조(나노(Nano) 디그리·마이크로(Micro) 디그리 개설) 사업 컨소시엄 참여대학들의 공동 협약에 따라 기후환경과문화 전공 내에 나노(Nano) 디그리와 마이크로(Micro) 디그리를 개설할 수 있다. 나노 (Nano) 디그리와 마이크로(Micro) 디그리의 충족 요건은 사업계획서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.
- 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